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2. . . (제 회)	
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총리 (국가보훈처 소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병역법」에 따른 현역병 등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의무복무자가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경우 구타·폭언, 가혹행위, 과중한 업무부담, 초과근무 등에 따른 육체적·정신적 과로가 직접적인 원인이 있는 경우에만 보훈보상대상자가 될 수 있었으나, 앞으로는 복무 중 자해행위로 사망한 경우 ‘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’가 아니면 보훈보상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의무복무자의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,

종전에는 경찰, 소방공무원과 그 밖의 공무원이 구타·폭언, 가혹행위, 과중한 업무부담, 초과근무 등에 따른 육체적·정신적 과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경우, 그간 질병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인정하였던 것을, 앞으로는 자해사망 인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 호와 같다”를 “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제16호”를 “제17호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제10호 또는 제11호”를 “제10호, 제11호 또는 제15호”로 한다.
별표 1 제15호의 기준 및 범위란 중 “군인 또는 의무복무자로서 직무수행”을 “직무수행”으로 하고, 같은 표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7.	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. 다만, 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이유로 사망한 사람은 제외한다.
-----	--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관한 적용례) 제2조제1항 제1호·제2호 및 별표 1 제15·제1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·의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) ①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<u>각 호</u> 와 같다.	제2조(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각 호</u> 의 구분에 따른다.
1. 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: 별표 1 제1호부터 <u>제16호</u>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또는 상이자	1. ----- ----- ----- <u>제17호</u> ----- ----- -----
2.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: 별표 1 제1호부터 제7호까지, <u>제10호</u> 또는 <u>제11호</u>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또는 상이자	2. ----- ----- ----- <u>제10호</u> , <u>제11호</u> 또는 <u>제15호</u> ----- -----
② · ③ (생 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	
연 락 처	(044) 202 - 5431